

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 단서 중 “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”을 “7퍼센트를 넘지 않는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단서 중 “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”을 “7퍼센트를 넘지 않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11월 10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군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장 진 영

●대통령령 제31145호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4호 중 “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, 학교, 어린이집, 학원,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”를 “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(이하 “어린이교육시설등”이라 한다)의 장”으로, “유치원, 학교, 어린이집, 학원 또는 체육시설”을 “어린이교육시설등”으로 한다.

제31조의2제1항 중 “어린이교육시설”을 “어린이교육시설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”을 “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(이하 “동승보호자”라 한다)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전자”를 “운전자 및 동승보호자”로, “비치하여야”를 “비치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어린이교육시설”을 “어린이교육시설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운전자”를 “운전자 및 동승보호자”로 한다.

별표 6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부터 제11호의5까지를 각각 제11호의3 및 제11호의5부터 제11호의7까지로 하고, 같은 표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11호의6(종전의 제11호의4)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“운전하게”를 “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”로 한다.

11의2.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전자	제160조제1항제8호	30만원
--	-------------	------

11의4.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	제160조 제2항 제4호의5	8만원
--	-----------------	-----

별표 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.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나.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(14만원)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(13만원)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(10만원)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(9만원)
---	----------	---

별표 8 제1호의2의 근거법조문란 중 “제53조제1항·제2항·제4항·제5항, 제53조의2”를 “제53조제1항·제2항, 제53조의5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호의3을 삭제한다.

별표 10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정차·주차 금지 위반 가.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나.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	제32조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9만원 4) 자전거등: 6만원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6만원 4) 자전거등: 4만원
7. 주차금지 위반 가.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나.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	제33조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9만원 4) 자전거등: 6만원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6만원 4) 자전거등: 4만원
8. 정차·주차방법 위반 가.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	제34조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9만원 4) 자전거등: 6만원

나.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		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6만원 4) 자전거등: 4만원
9. 정차·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가.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나.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	제35조제1항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9만원 4) 자전거등: 6만원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6만원 4) 자전거등: 4만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7 제3호 및 별표 10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 또는 제53조의2”를 “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”로 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,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17311호, 2020. 5. 26. 공포, 11. 27. 시행)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시기와 그 교육확인증의 비치 위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·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11월 10일

국무총리 정 세 군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

진 영

●대통령령 제31146호

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